

지하수법의 개정방안

원 인 회

1. 지하수법 개요

1.1. 지하수법의 목적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

1.2. 지하수법의 연혁

▷ 1993년 12월 10일: 지하수법 제정,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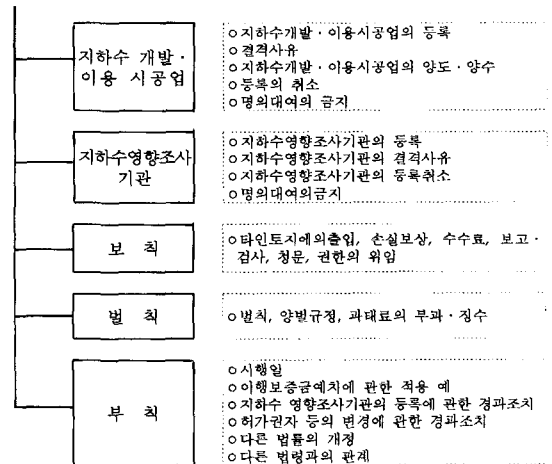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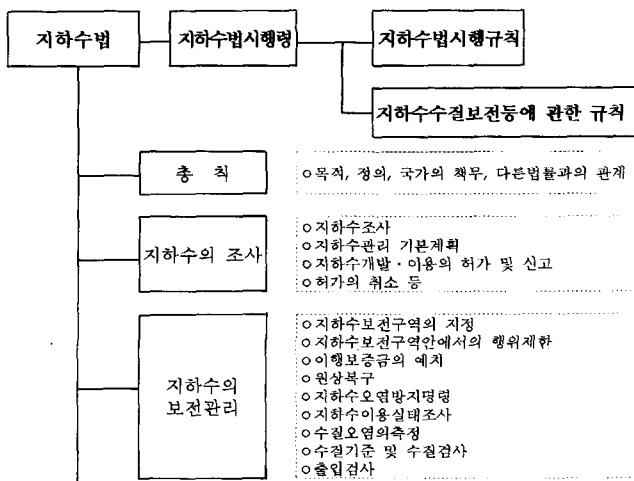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원 고갈, 폐공 방지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각종 지하수 장애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하수 조사 및 개발, 이용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법 제정

▷ 1997년 1월 13일: 제1차 지하수법 개정

지하수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하수 공 개념 도입을 통한 지하수 관리 체계 강화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제 도입
- 지하수 영향조사제 도입
-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제 도입
- ▷ 1999년 3월 31일: 제2차 지하수법 개정
- 규제개혁 차원의 개정으로서 행정규제 완화
- 권한의 하부기관 위임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조건의 완화 등

1.3. 지하수법의 체계



2. 지하수법 개정배경 및 필요성

- ▷ 최근 지표수 개발 여건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21세기 물 부족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수자원이므로 지하수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 국내 지하수 이용량은 '94년 이후 매년 3.5억톤씩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0년경에는 지금의 2배 수준인 약 75억톤에 이를 전망이다
-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초과하여 이용하고 있어 지하수자원의 총량관리제도 정립 필요

· '98년말 현재 국내 지하수 이용량은 37억 m³/년으로서 매년 증가

구분	'94	'95	'96	'97	'98
우물수(개)	637,285	763,646	786,921	946,361	974,078
이용량 (10 ⁶ m ³ /년)	2,571	2,623	2,864	3,382.8	3,708.8

자료) 지하수조사연보, 건설교통부

- ▷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폐공방치등으로 수원이 고갈되고 수질오염이 심화되는 등 지하수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예산부족, 제도의 미흡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이에 따라 변화하는 지하수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그동안 지하수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1세기 최후의 수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체계를 개선키 위하여 금번 지하수법을 전면 개정 추진

3. 지하수법 개정 주요 골자

3.1 지하수 공수(公水)개념 도입

지하수는 국가가 보전·관리의무를 지는 공공의 자원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여 지하수의 공적관리체계를 확립함

3.2 지하수관리 정보인프라 구축

지하수보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지하수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고자 전국의 수문정보, 개발·이용정보, 지질정보등 지하수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지하수관리정보인프라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

3.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지하수에 대한 양적·질적관리가 포함된 국가지하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면서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지하수관리가 가능토록 함

3.4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제도 개선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 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제』를 『우물조사제』로 완화·조정하여 영향조사제의 실질적 실효성을 높이고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해 대량의 지하수를 채취하는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변 지하수이용자와의 분쟁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하수공동이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대상에 대하여는 사전토지굴착신고제를 도입함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무가 면제되었던 가정용·농업용 등의 경미한 지하수개발·이용도 신고대상으로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시설도 필요시 취수량, 취수기간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3.5 유출지하수의 재이용방안 강구

지하철·터널 등 지하구축물로 인해 유출·방류되는 지하수의 저감대책과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폐공발생 방지를 도모함

3.6 지하수보전구역제 개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하수보전구역과 지하수개발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동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하수오염 예방 및 과다개발 방지를 도모함

3.7 취수정보보호구역제 도입

다수인이 음용목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공공급수정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토록 취수정보보호구역 지정제를 신설함

3.8 지하수관측 강화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국가관측망을 보조하는 지역단위 보조관측망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량·수질에 대한 상시 감시·관측체계를 강화함

3.9 오염유발시설에 의한 오염방지 강화

폐기물, 유독물등에 의한 지하수오염 유발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와 이들 시설에 의한 지하수오염여부를 감시하고 오염시 정화를 실시토록 하는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제도를 강화함

3.10 지하수 개발질서 확립

지하수개발에 사용되는 시추기·착정기등 굴착장비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개발 질서를 확립함

3.11 지하수영향조사평가자 제도 도입

현행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우물조사자로 대체하고 지하수의 보호·보전과 오염지하수의 정화등 고도의 전문적인 지하수관련 조사평가업무를 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평가자제도를 도입함

3.12 지하수관리위원회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보전·관리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지하수관련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와 지방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고 투명한 지하수정책을 추진토록 함

3.13 지하수이용부담금제 도입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수보전·관리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제도등을 도입함

3.14 지하수기술인력 교육훈련제도 도입

날로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는 지하수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하수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선진화된 기술과 지식을 익히도록 지하수종사자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함

4. 지하수법 개정 세부 내용

4.1 지하수의 공수개념 도입

▷지하수는 국가가 보전·관리의무를 지는 공공의 자원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여 지하수의 공적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 및 신설

- 지하수를 사수로 인식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남발되고 지하수에 대한 보전의식도 미흡한 실정임
- 세계적으로도 지하수의 공수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입법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지하수는 국가가 보전·관리 의무를 지는 공공의 자원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여 지하수의 공적 관리체계를 확립

4.2. 지하수보전·관리 정보인프라 구축

- ▷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지하수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하수 정보인프라 구축의 근거 규정 신설
- 지하수 난개발에 따른 시추비용의 낭비와 실패공 양산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상호 교환 및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이에 따라 국민의 지하수개발·이용정보, 수문·수질정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하수조사 및 국토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관련 정보에 체계적인 수집 및 D/B 화를 통한 정보인프라 구축 추진
 - 관계기관, 국민 등에 제공

4.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 ▷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 및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규정 신설
- ▷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지역지하수관리기본계획수립·시행을 의무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규정 신설
- 타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농어촌용수, 먹는물, 온천수 등은 지하수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일반 지하수와 동일한 지하수이므로 모든 지하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지하수 관리 도모
-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일선 관계기관의 지하수관리의 기본지침 성격이며, 지하수는 지형 및 지질특성에 따라 그 부존 및 산출특성을 달리하므로 지자체별 지역지하수관리 기본계획수립·시행을 의무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하수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하수관리 도모

4.4.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제 보완

-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미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
- ▷ 지하수영향조사제를 우물조사제로 완화하고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허가시설의 관리 강화
- ▷ 토지굴착 신고제 신규 도입 등
- 현행 지하수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시설이 전체 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하수오염방지조치 등 최소한의 규제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현황통계조차 파악이 곤란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경미한 시설도 관리 대상에

<'98년말 현재 허가·신고 및 경미시설 현황>

(단위: m ³ /일, 개소)				
구 분	총 계		허가시설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계	974,078	3,708,787,358	9,198	206,102,520
(비율)	(100)	(100)	(0.9)	(5.5)

구 분	신고시설		경미 및 기타시설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계	170,465	1,340,373,198	794,415	2,162,311,639
(비율)	(17.5)	(36.1)	(81.6)	(58.4)

포함

- 허가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실제 우물공사비와 비금가는 과다한 영향조사비 소요로 국민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적정채수량과 이용허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만 실시토록 현행법상의 지하수영향조사를 우물조사제로 완화
- 지하수개발 실패공 발생시 원상복구처리하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가 있어 개발 실패공 방지에 따른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토지굴착신고제를 도입
- 지하수 허가여부 결정을 위한 우물조사서 심의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 이용자와 공동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지역별 지하수자원의 총량관리 도모
- 우물 및 수중모터펌프의 내구연수를 고려한 허가 유효기간(5년)의 설정으로 허가시설의 관리 강화

4.5.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제 보완

-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대상시설의 관리를 위한 규정 정비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대상시설도 허가대상시설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접수시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부적합하거나
 - 수원고갈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수리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 또는 취수기간 제한, 공동 이용조치명령, 이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4.6. 유출지하수의 재이용방안 강구

- ▷ 지하철·터널 등 지하굴착으로 인하여 유출·방류되는 지하수의 저감대책과 지하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재이용방안 수립 규정 신설
- 지하철, 터널, 대형건축물 터파기공사 등 지하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대량 유출시 주변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인근지역 지하수 수원 고갈, 지반침하 등의 피해 방지 대책 수립 필요
- 유출 지하수의 수질이 양호하여 간단한 수처리후 재이용이 가능하므로 유출 방류 지하수의 재이용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4.7.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제 도입

-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폐공 발생을 방지하고 지하수 수질보전을 기할 수 있도록 토지의 굴착신고제를 신규로 도입
- 지하수개발을 위한 지하굴착공 이외의 지하수 및 지질조사용 시추공, 공사용 시추공 및 대구경 굴착공 등은 지하수 개발공과 동일한 지하수 오염원의 유입, 유출경로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특히, 국토개발과정에서 건설용 및 제반 조사용으로 굴착되는 시추공(연간 15,000~20,000공 정도 예상)은 지하수오염 잠재위험도가 매우 높아 지하굴착공 방치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 지하굴착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굴착행위신고를 하도록 규제

4.8.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

- ▷ 현행 지하수보전구역제를 지하수보전구역과 지하수개발제한구역제로 구분하여 동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하수오염 예방 및 과다 개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및 신설
- 현행 지하수보전구역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하수오염 예방 및 과다 개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수보전구역과 지하수개발제한구역제로 구분하여 각 특성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및 신설
-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관리
 -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서로 연결된 상류의 지하수 함양지역
 -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이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 지하수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 기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
- 지하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
 - 지하수 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해당지역의 지하수개발가능량을 초과한 지역
 - 지하수의 과다한 개발·이용으로 지하수의 고갈현상이나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하수개발·이용으로 인해 주변구조물, 시설 및 지반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시키거나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해안·도서지역에서 지하수를 과다 채수함으로 인해 염수가 담수대내로 침입한 지역이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장래 용수공급을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기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이 필요한 경우

4.9. 취수정 보호구역제 도입

- ▷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급수정을 오염요인으로부터 보호하여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토록 취수정보호구역 지정제를 신설
- 공공의 음용목적으로 지하수를 취수하는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 오염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대책 및

구역관리의 필요성 대두

- 취수정보호구역안에서는 취수정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행위제한을 통해 공공취수정 주변지역을 보호함으로써 공공급수정으로부터 취수되는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함

4.10.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시설의 폐공처리 방안 등 개선

- ▷ 지하수개발공뿐만 아니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굴착공 폐공처리 의무화
- 지하수개발공뿐만 아니라 지하수 및 지질조사용 시추공, 공사용 시추공 및 대구경 굴착공 등에 대하여 지하굴착공 방치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지하굴착공의 폐공처리 의무화
- 폐공처리 의무자가 폐공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공처리의 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폐공처리

4.11. 지하수 관측 및 조사 강화

- ▷ 지하수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단위 보조관측망을 설치하여 수량·수질 등을 관측토록 관련 규정 정비 및 신설
- ▷ 수질측정망을 보다 명확하게 조문에 규정
- 지하수 관측망은
 - 장기적이며 주기적으로 지하수위 및 수질관측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부존 및 유동특성과 배경수질을 파악 규명함으로써
 - 지하수의 수위저하, 지반침하, 수원고갈 및 수질오염 등의 지하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 이를 토대로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발 계획과 보호·보전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설치된 감시 및 예보 기능을 가진 시설
- 관측망은 크게 국가관측망(건교부)과 보조관측망(지자체)으로 구분, 추진되며 보조관측망의 시행을 지하수법에 추가명시함으로써 오염원의 적극적인 감시와 국지적인 지하수 장애 발생의 사전 방지
- 또한,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실태 측정 결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수질측정망(환경부)의 설치기준, 범위,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

4.12. 지하수의 수질기준 세분화

- ▷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일반적인 수질기준외에 지하수 수질오염경고기준, 지하수수질오염대책기준 및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정함
- 지하수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오염유발행위·수단·시설로 인해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때의 각종 시정 등 필요한 조치와 오염지하수를 정화할 때의 제반 정화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 규정
 - 지하수수질오염경고기준
 - 지하수수질오염대책기준
 -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4.13. 지하수 오염유발시설·행위의 관리강화

- ▷ 지하수오염유발시설·행위에 대한 관리와 이들 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여부를 감시하고 오염시 정화를 실시토록 하는 등 유해물질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제도를 강화토록 규정 신설
- 오염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미치는 막대한 손실과 치명적인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따라서 지하수오염유발행위 및 시설의 정의 및 종류,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신고, 지하수 오염여부의 감시, 지하수 오염의 방지조치 및 오염 지하수의 정화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
 - 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행하는 행위제한대상 시설로 함
 - 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일정의 오염유발시설은 관측정을 설치하여 오염여부를 감시토록 함
 - 지하수가 오염경고기준과 대책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오염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시설의 이전·철거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정화를 위해서 필요시 토지이용등을 제한하고 자격있는 자에 의한 오염유발시설관리를 하도록 함

4.14. 지하수 개발질서 확립

- ▷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기술력이 낮은 높은 업체가 참여토록 하여 시공업체의 기술력 향상
- ▷ 지하수 개발에 사용되는 시추기·착정기 등 굴착장비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 개발 질서를 확립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지하수개발에 대하여 공사의 난이도가 높아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술력이 높은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토지굴착신고 및 지하수개발·이용허가나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 무단 지하수 개발행위 방지
- 지하수개발장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장치가 없어 무질서한 지하수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어 장비등록제를 도입하여 굴착장비의 소유·이동상황을 관리함

4.15. 우물조사자와 지하수영향조사평가자

- ▷ 현행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우물조사자로 대체하고 지하수의 보호·보전과 오염지하수의 정화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지하수관련 조사평가업무를 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평가자 제도를 도입
- 고가의 지하수 영향조사비용으로 인해 지하수의 지속적인 개발·이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에 따

- 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의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지하수영향조사제도를 우물조사제도로 변경하고 현행보다 저가로 조사가 가능토록 항목 및 방법을 조정
- 기존의 지하수조사영향조사기관을 "우물조사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우물조사를 시행토록 함
- 이와 별도로 지하수오염의 원인 규명이나 오염지하수의 정화 및 지하수 보호대책 수립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평가·시행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평가자』제도를 도입함 - 『지하수영향조사평가자』는 등록제로 하며 시행령에서 등록기준을 정함

4.16.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지하수관련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와 지방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 지하수정책에 대한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정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각종 기술자문을 위해 심의·자문기관으로써 민·관으로 구성되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4.17. 지하수이용부담금제 도입

- ▷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수 보전관리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
-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조사·관측 등을 통해 지하수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나 투자예산의 절대부족으로 관리기반조차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최후의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호·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적절히 통제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장치로써 지하수이용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정부예산과 함께 지하수보전·관리 및 오염방지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양질의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부과대상: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나 소량의 가정용 및 농업용 지하수, 공공용 지하수 등은 면제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그 범위나 부과율 등은 시행령에 규정

4.18. 지하수 기술인력 교육훈련제도 도입

- ▷ 지하수관리의 전문화에 대응하여 지하수관련 종사자의 전문 지식 함양과 기술습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수 기술인력 교육훈련제도 도입
- 지하수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서는 관련 기술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나 현재 국내의 지하수 시장 및 기술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원 인 회

- 지하수 개발이 매년 증가하고 관련기술도 복잡·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나 지하수종사자가 적기에 기술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없음
 - 지하수개발·이용 및 조사관련 업계의 종사자만도 4~5천 명정도임
- 따라서 지하수 개발·이용의 최일선에 배치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종사자, 우물조사업무 종사자, 지하수영향조사평가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로 지하수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하수정보·기술의 보급 필요